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39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1. 2. 25(목) 10: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39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21년 2월 25일(목) 10:30

□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함.

□ 재적이사 : 총 10명

□ 출석이사 : 총 8명

이사장 직무대행이 제39회 임시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사무국장이 제39회 임시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에 이어 안전을 간단히 설명하고, 송연숙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다.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2021년 연간 이사회 운영 계획

3. 재단 운영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 직무대행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216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제216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제216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설명하고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본 안건에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기부금 사용승인 상세 내역은 2020년 입금된 개인기부금 4,140천원(○○○ 140천

원, ○○○ 4,000천원)을 오토꿈이름서울장학금과 유명아학업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2021년 서울시에서 서울장학재단 사무국 운영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10,100,254천원을 분기별로 출연할 계획이며, 분기별 출연 예정 금액은 1분기 324,898천원, 2분기 4,143,476천원, 3분기 3,108,545천원(성과급 64,095천원 포함), 4분기 2,523,335천원이며, 성과급은 3분기 출연 예정 금액에 포함되어있으나, 실제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출연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2021년 기부 예정된 금액은 총 159,000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주)○○○○○○○에서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지원을 위한 「오토꿈이름서울장학금」으로 30,000천원, (재)○○○○○○(○○ 임직원 기부금)에서 결손가정 대학생 지원을 위한 「청춘start장학금」으로 78,000천원, (주)○○○○○○○에서 저소득 대학생 지원을 위한 「유명아학업장학금」으로 48,000천원, ○○○○○○○에서 긴급위기가정의 중·고·대학생 지원을 위한 「서울희망SOS장학금」으로 3,000천원이 기부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6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17호 2020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218호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219호 2020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2020년 회계 및 예산 결산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217호 2020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218호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219호 2020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을 통합하여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정관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2020년 회계 및 예산 결산을 확정하고, 정관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0년 세계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상정하였다고 제안 설명하다.

2020년 회계감사는 서울시에서 회계감사의 연속성 유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 업무 수행 기간을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지정함에 따라 2018~19년 회계감사법인인 삼덕회계법인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말한다.

관련 법률에 의거 결산서에 대해 내부 감사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양일수 감사의 임기 만료(2021.1.7.)에 따른 공석으로 당연직 감사(시 감사담당관)만 확인을 받았으며, 이 사항에 대해 이사들의 추인을 요청하다.

이사회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자산총계 14,853,071,428원, 부채총계 330,214,087원, 순자산 총계 14,522,857,341원이라고 설명하고, 운영성과표에 대하여 사업수익 11,713,930,490원, 사업비용 12,301,626,042원, 사업 손실 587,695,552원, 사업 외 수익 273,591,626원, 사업 외 비용 1,474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14,105,400원이라고 설명하다.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총계는 12,933,071,673원이며, 세출총계는 12,283,966,445원으로 세계잉여금이 649,105,228원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전액을 2021년도에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등 총 16개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감사 2명 중 선임직 감사는 회계감사를 하고 당연직 감사는 직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임직 감사의 공석에 따라 결산서에 대해 당연직 감사 1인의 확인을 거친 사항에 대해 추인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외부회계 감사 시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묻다.

사무국장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이 있었다고 말하다.

○○○ 이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원안에 동의한다고 말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서 확인과 관련하여 선임직 감사의 공석에 따라 당연직 감사 1인의 확인만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이사 전원 찬성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하고, 제217호 2020년 재무회계 결산(안) 심의의 건, 제218호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제219호 2020년 세계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20호 2021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

이사장 직무대행은 제220호 2021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회의자료 통해 2020년 제12회 정기이사회(2020.11.24.)에서 확정된 2021

년 예산(안) 대비 2021년 실행예산(안)을 설명하며 기부금, 운용소득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다. 2021년 세입 실행예산 총액은 11,113,268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서울시 출연금 10,100,254천원, 기부금 수입 159,000천원, 전기이월금 649,105천원, 운용소득 등 204,909천원이며, 세출 실행예산은 총 11,113,268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사무국운영비 1,077,750천원, 장학사업운영비 9,806,609천원, 예비비 및 기타 228,909천원이라고 설명하다.

지난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 중 주요 변경된 사항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장학사업의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예산 및 결산잉여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학업과 취업난의 이중고를 겪는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을 위한 희망플러스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정자녀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희망SOS장학금을 증액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설명하다. 재단은 2021년 총 18개 장학사업을 통해 5,700명 선발, 9,48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생 멘토링, 아카데미 운영 등 장학생 성장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하다.

○○○ 이사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성과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묻다.

사무국장이 성과관리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하고,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진로 현황 및 성장보고를 통해 점검 확인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평가와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평가 및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다.

○○○ 이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다.

사무국장이 성과관리를 위해 고교진로장학금의 경우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 공통지표를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은 제한된 인력으로 장학생 선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사업별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 이사가 성과 평가 및 장학생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커뮤니티지원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하며, 아카데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 묻다.

사무국장이 아카데미는 진로개발과 관련된 강연, 미디어스쿨 등을 진행하며,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인문학적 지식과 취업에 필요한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독서 토론, 토의, 오픽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한다.

○○○ 이사가 커뮤니티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되는지 묻다.

○○○ 부장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재단에서는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장학생이나 졸업생들이 함께 동아리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카데미는 장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장학생커뮤니티지원사업의 예산이 좀 적지만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사무국장이 현재 장학생커뮤니티지원사업의 예산이 적지만, 향후 예산 증액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장학사업의 성과관리가 중요하며, 성과관리를 통해 장학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2021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0호 2021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21호 2021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심의의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제221호 2021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단을 안전하게 경영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회의자료를 통해 안전보건 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이사가 매뉴얼을 만드는 것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고, 안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2021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심의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1호 2021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22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제222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인사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인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가족돌봄휴직 허용 예외 사유를 개정하고,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근로자 동의를 거쳤다고 부연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2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23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 직무대행이 제223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①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간 규정화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②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검진 휴가와 생리휴가 규정 정비, ③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개정 및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사유 신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외 규정 개정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과 단축의 최대 기간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근로자 동의를 거쳤다고 부연 설명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이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3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